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38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석

변 론 종 결 2023. 11. 22.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2. 8. 접수 제141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전세사기 일당인 C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C에게 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2021. 2. 8.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원고는 2022년 3월 초순경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았다.

나.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임차인 D에게 임대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을 이유로 위 D 측으로부터 2023. 2. 28.경 임대차보증금 2억 9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주장을 2021. 2. 8. 이 사건 주택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C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그러나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C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별지